## 학과평가 규정

(제정 2023.12.1.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"이라 한다)내 학부(과) 및 전공에 대한 평가(이하 "학과평가"라 한다)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학과평가는 우리 대학의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한 학과의 전반적인 현황 및 노력 등을 평가영역별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제3조(주관부서 및 역할) 학과평가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 성과관리팀으로 하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학과평가 시행 계획 수립
  - 2.학과평가 시행
  - 3.학과평가 결과 도출 및 관리
- 제4조(평가대상) ①학과평가는 우리 대학 학칙상의 학부(과) 및 전공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학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.
  - ②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학과 또는 외국인 전용학과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**제5조(평가주기 및 대상기간)** 평가는 매 1년을 주기로 실시하고, 대상기간은 전년도 2개 학기 (1, 2학기)로 하되 평가지표별로 따로 그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**제6조(학과평가위원회)** ①학과평가 시행을 위해 학과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  -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, 회의를 통할한다.
  - ③위원회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하고, 기획조정실장, 교육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  - ④위촉직은 전임교원 중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, 학과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가 진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.
  - ⑤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 - ⑥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
  -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  - 1.학과평가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정
  - 2.학과평가 지표 개발 및 보완
  - 3.학과평가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조정
  - 4.학과평가 결과 활용

- 5.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⑧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⑩회의는 기획조정실 성과관리팀에서 주관하며, 간사는 성과관리팀장으로 한다.
- **제7조(학과평가 결과의 활용)** 학과평가 결과는 관련부서에서 학과별 지원금, 학사구조개편 등에 활용될 수 있다.
- 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